|  |  |  |
| --- | --- | --- |
| **1.6.8 “국가환경보호총국 순환경제발전 추진에 대한 지도의견” 발부에 대한** **통지**环发〔2005〕114호   각 성, 자치구, 직할시 환경보호국(청), 계획단독배정시 환경보호국:“국무원의 순환경제발전을 다그칠데 대한 몇가지 의견”(國發[2005] 22호)의 요지를 전면적으로 관철하고, 환경보호업무에 결부하여 순환경제발전을 추진하고, 환경을 보호 및 개선하고, 자원 절약형 및 환경 친화형 사회의 건설을 촉진하기 위하여 당 국은 “국가환경보호총국 순환경제발전 추진에 대한 지도의견”을 제정하여 발부하므로 열심히 관철하고 집행하기 바란다. 첨부: 국가환경보호총국 순환경제발전 추진에 대한 지도의견 2005년 10월 10일첨부: **국가환경보호총국****순환경제발전 추진에 대한 지도의견**“국무원의 순환경제발전을 다그칠데 대한 몇가지 의견”(國發[2005] 22호, 이하 “의견”이라고 함)의 요지를 전면적으로 관철하고, 환경보호업무에 긴밀히 결부시켜 순환경제발전을 추진하고, 말단처리를 중점으로 하는 전통적인 오염방지 형식을 다그쳐 바꾸고, 환경보호 감독관리 능력을 강화하고, 환경을 보호 및 개선하고, 자원 절약형 및 환경 친화형 사회를 건설하기 위하여, 환경보호부서의 순환경제발전 추진과 관련하여 아래의 의견을 제기한다. 1. 순환경제발전 업무추진 중에서의 환경보호부서의 중요한 작용과 지위를 충분히 인식해야 한다. (1) 순환경제발전과 환경보호의 관계를 깊이 이해해야 한다. 우리나라는 인구가 많고 자원이 상대적으로 부족하고 경제구조가 합리적이 못되고 경제성장방식이 조방하고 자원 이용률이 낮고 환경오염이 심각하다. 자원과 환경은 이미 우리나라의 지속적 발전을 가로막는 주요문제로 되고 있다. 순환경제의 발전은 오염예방과 생산 전반과정의 컨트롤 촉진, 지역적 및 구조적 환경오염문제를 해결하는데 유리하다. 최근에 전국 환경보호계통은 순환경제발전을 환경과 경제의 윈-윈을 이루는 하나의 중대한 조치로 삼아 순환경제 이념을 폭 넓게 선전하고 이론과 정책연구를 조직하여 기업, 지역과 사회 등 여러 면의 시범과 실천탐구 활동을 벌려 조방형 경제성장 방식의 전환을 촉진하여 일정한 정도에서 전국 환경오염의 압력을 완화시켰다.　　(2) 환경보호부서의 기능정착을 명확히 해야 한다. 각급 환경보호부서는 “의견”의 요구와 기능분공에 따라 발전개혁(경제무역) 등 관련부서와 밀접히 협력하고 동시에 환경보호의 제반업무에 결부시켜 순환경제의 가속 발전을 전면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각급 환경보호부서는 순환경제발전에 대한 “지도, 감독, 촉진, 서비스”를 강화해야 한다. 순환경제발전에 유리한 법률법규, 정책, 표준을 제정하고 순환경제계획 기술메뉴얼을 편성하여 순환경제의 발전을 지도해야 한다. 환경보호부서의 환경 집법 직책을 열심히 수행하고 환경 집법력을 진일보 강화하며, 환경 감독관리를 강화하고 계획 환경영향 평가, 건설프로젝트 환경영향 평가와 “3가지 동시” 제도를 엄격히 집행하며, 기업진입에 대한 환경요구를 높이고 중점기업에 대한 청정생산 심사를 추진해야 한다. 선전교육과 연수훈련을 강화하고 청정생산을 추진하고 순환경제 시범업무를 심도있게 벌려야 한다. 순환경제의 과학연구와 기술개발을 조직, 전개하여 순환경제의 기술지원체계의 구축과 완벽화, 우리나라 순환경제발전 수준과 가속화에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2. 순환경제발전 계획과 지도를 강화해야 한다.　　(3) 순환경제발전 전략과 계획을 제정해야 한다. 우리나라 환경보호 업무의 수요에 근거하여 순환경제발전을 추진하고 환경 친화형 사회를 건설하는 전략과 계획을 제정해야 한다. 각급 환경보호부서는 현지 발전개혁위원회가 편성하는 순환경제발전 계획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순환경제 이념으로 “11.5” 계획과 각종 전문아이템 계획을 지도해야 한다. 또한 각종 경제기술개발구와 하이테크산업개발구의 생태공업단지 건설을 힘써 추진하고 중점기업, 지역의 순환경제 실천을 추진하여 그 순환경제발전계획의 편성을 지도해야 한다. 　　(4) 전국 순환경제건설에 대한 분류지도를 강화해야 한다. 환경관리 요구에 근거하여 부동한 지역과 중점유역, 부동한 유형 공업단지의 순환경제발전계획을 제정해야 한다. 철강, 비철금속, 석탄, 전력, 화공, 건자재, 제지, 식품, 방직, 전기전자 등 중점 업계의 순환경제발전 메뉴얼을 작성해야 한다. 　　3. 순환경제발전을 추진하는 환경표준체계와 환경기술정책을 제정하고 완벽히 해야 한다. (5) 환경표준을 엄격히 하고 순환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추진해야 한다. 국가의 업계 오염물 배출표준 제정업무를 강화하고 기업이 환경 친화형 생산공정과 기술을 사용하도록 추진해야 한다. 폐기비닐, 폐기타이어, 폐기전기제품 등 자원회수이용 환경오염통제 기술규범을 제정해야 한다. 청정생산표준 체계를 수립 및 완벽히 하고 업계의 청정생산 심사메뉴얼을 제정하여 각 지역과 각 업계의 청정생산 심사를 지도해야 한다. 각 성(자치구, 직할시) 환경보호부서는 지방 업계 오염물 배출표준의 제정을 강화해야 한다. 중점개발구와 중화공 집중지역에 대해서는 순환경제이념에 따라 입주 기업에 대한 청정생산과 폐기물 배출 종합통제 요구를 제기해야 한다.(6) 오염 방지 및 생태보호기술 정책을 제정해야 한다. 자원과 에너지 소모가 크고 오염이 심한 업계의 오염방지 기술정책을 제정하고 완벽히 하며, “감량화, 재사용, 자원화, 무해화”를 오염 방지의 기본 도경으로 하여 제품생산의 전반 프로세스에서 오염 방지와 정비를 강화하여 말단처리 압력을 최대한 저감해야 한다. 중점지역과 유역의 생태보전 실제수요에 근거하여 관련 기술정책을 제정하며, 생태농업 발전에 필요한 기술정책을 제정 및 완벽히 하고 환경 친화형 농업생산기술과 오염통제기술을 널리 보급해야 한다.4. 순환경제 시범을 심화해야 한다. (7) 생태공업, 순환경제 시범을 심화해야 한다. 경제적 효과가 뚜렷하고 자원이용이 합리하고 환경이 깨끗하고 아름다운 기업을 선택하여 환경 친화형 기업 시범을 진행해야 한다. 각종 국가급 및 성급 개발구, 대형기업그룹과 자원재생이용산업(정맥산업)단지를 중점적으로 선택하여 생태공업 시범을 진행하여 순환경제시범구, 생태 성(시, 현), 생태시범구, 국가환경보호 모범도시, 환경이 아름다운 향진, 문명생태 촌, 녹색 구역사회, 녹색학교와 환경 친화형 프로젝트 등의 건설을 추진해야 한다. 각 성(자치구, 직할시) 환경보호부서는 국가환경보호총국의 지도하에 현지 순환경제시범 업무를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8) 국가 생태공업시범단지와 순환경제시범구 건설에 대한 지도와 감독관리를 강화해야 한다. 첫째, 국가 생태공업시범단지와 순환경제시범구의 지표체계와 검수표준을 발표하여 시범 업무를 규율한다. 둘째, 생태공업과 순환경제의 계획건설 기술메뉴얼을 제정하여 각종 시범과 건설을 지도한다. 셋째, 현장 감독검사를 포함한, 각종 시범 및 시범단위에 대한 관리를 강화함으로써 시범 및 시범단위가 지속적인 개선을 통해 오염물 배출을 줄이고 지역 환경품질을 개선하도록 보장한다. 넷째, 전국 순환경제 시범경험을 시의 적절하게 총결하고 순환경제선진모델을 보급한다. 각 성(자치구, 직할시) 환경보호부서는 국가환경보호총국을 협조하여 국가생태공업시범단지와 순환경제시범구 건설에 대한 지도와 감독관리를 실시하고 중대한 문제를 발견한 경우 제때에 보고하는 동시에 정돈, 개선 조치를 제기해야 한다. 　　5. 환경보호산업의 발전을 적극 인도해야 한다.(9) 환경보호산업에 대한 정책적 인도를 강화해야 하며, 특히는 정맥산업 발전에 대한 인도를 중요시 해야 한다. 정맥산업의 발전 정책, 법규, 표준과 기술규범을 제정하여 각종 폐기물의 순환이용을 추진하고 규범화 해야 한다. 첫째, 고철, 폐기 알루미늄, 폐기구리, 폐지, 폐기 플라스틱, 폐기 타이어, 폐기 가전제품과 전자제품, 폐기 방직품, 폐차, 폐기 포장물, 음식찌꺼기 등의 회수 및 순환이용을 추진하여 폐기물의 회수, 가공, 이용체계를 부단히 완벽히 해야 한다. 둘째, 공업 폐기, 폐수, 고체폐기물의 순환이용을 강화하고 위험폐기물의 처리를 중점적으로 틀어쥐어야 한다. 특히 분말석탄, 선탄 부스러기, 광미와 야금, 화공폐기물 및 유기폐수의 순환이용을 중점으로 하여 공업폐기물의 종합이용을 추진해야 한다. (10) 정맥산업단지의 환경관리를 강화해야 한다. 정맥산업단지의 건설은 우리나라 정맥산업의 규모와 과학기술 수준을 제고하는데 유리하고, 또한 정맥산업의 오염 방지 및 정비와 환경관리에도 유리하다. 엄격한 환경관리를 통하여 폐기물 재생과정 중의 2차 오염을 줄이고 지역의 환경품질과 거주민의 건강을 보호하는 동시에 수입 폐기물의 산업단지 유입관리를 강화하여 “폐기물이용” 명의로 경외 폐기물을 불법 구입하는 것을 방지해야 한다. 　　6. 환경 감독관리를 강화해야 한다.(11) 환경영향 평가를 강화하고 환경진입제도를 엄격히 집행해야 한다. 첫째, 계획 환경영향평가를 적극 추진하여 환경요소를 더욱 체계적으로 거시 전략정책에 넣어 경제발전과 환경보호 간의 모순을 해결하고 산업발전, 생산력분포와 지역자원의 천성, 환경수용량과 생태기능의 일치성을 보장하고 발전방식의 전환과 순환경제의 실현을 추진한다. 둘째, 건설프로젝트 환경영향평가를 엄격히 실시하고 법에 따라 에너지와 자원소모가 크고 오염이 심한 신규건설 프로젝트를 제한한다.　　(12) 오염 업종과 기업의 전반 생산과정에 대한 오염물 배출 통제를 강화해야 한다. 법에 따라 오염물 배출이 표준 또는 총량을 초과하는 기업에 대하여 강제적 청정생산 심사를 실시한다. 당면하게는 중점적으로 전력, 철강, 화공, 비철금속, 날염, 식품, 제지 등 오염이 심한 업계의 청정생산에 대한 심사를 강화한다.　　(13) 엄격한 강제 도태제도를 구축해야 한다. 발전개혁(경제무역)부서를 협조하여 기술이 낙후하고 오염이 심한 생산공정과 설비 도태리스트를 공포하여 규모가 경제적이 못되고 오염이 심한 제지, 양조, 제혁, 전기도금, 날염, 화공, 제련, 코크스생산, 건자재, 화력발전 등 기업과 낙후한 생산력, 설비와 제품을 강제적으로 도태시켜 산업구조의 최적화를 촉진해야 한다.　　(14) 엄격히 법에 따라 행정하고 불법행위를 단호하게 처벌해야 한다. 중점지역, 업종의 환경 불법기업을 단속하는 환경보호 집법 특별행동을 조직하여 기업의 환경 법률 준수행위를 규율하고 기업의 공동생존과 집단의식을 촉진하는 목적에서 출발하여 환경 집법을 엄격히 하고 전사회적 환경의식을 강화하여 공평경쟁 환경을 마련하고 순환경제발전을 추진해야 한다.　　7. 순환경제발전을 추진하는 환경보호 법규 및 관련정책을 제정 및 완벽히 해야한다.　　(15) 순환경제발전을 추진하는 환경보호법규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각종 고체폐기물 회수이용 및 오염통제 관련 법규의 연구와 제정을 다그쳐 점차적으로 생산자의 책임확대 제도를 구축하며, 행정 대체수행, 환경진입 허가 등 제도를 연구, 제정한다.　　(16) 오염물배출 요금정책을 완벽히 하고 순환경제발전을 추진해야 한다. 중앙과 지방의 오염물배출비 사용을 순환경제프로젝트와 기술에 기울리고, 청정생산프로젝트, “0배출” 기술, 순환이용 기술 등의 시범과 보급을 중점적으로 지원해야 한다. 　　8. 환경보호시스템이 순환경제발전을 추진하는 기술혁신체계과 컨설팅서비스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17) 순환경제발전 기술혁신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순환경제기술의 연구개발과 보급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여 우리나라의 순환경제기술 수준과 혁신능력을 제고해야 한다. 각급 환경보호부서는 과학연구기구와 기업이 보편적 보급의의가 있는 감량화 기술, 재사용기술, 자원화 기술, 대체기술, 공생기술과 시스템집적기술 등 실용기술을 중점적으로 개발하고 자원 순환이용을 촉진하는 것을 장려해야 한다. 순환경제의 이론, 방법, 발전전략과 정책연구를 강화하여 자원과 에너지소모가 크고 오염이 심한 업종과 지역의 물질유동 및 물질대사 법칙을 중점적으로 연구하고 순환경제발전에 유리한 물질대사 재편기술을 연구해야 한다. 부동한 지역, 부동한 업계의 물자와 에너지소모, 폐기물 생성 및 배출 상황에 대한 조사, 연구를 실시하고 우리나라의 순환경제발전 잠재력과 도경을 연구해야 한다.　　(18) 순환경제발전 컨설팅서비스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순환경제정보시스템과 기술컨설팅서비스체계의 구축을 적극 지원하여 시의 적절하게 순환경제기술, 관리와 정책 등 면의 정보를 사회에 발표해야 한다. 현존 환경과학연구 및 서비스기구와 사회단체의 역량을 충분히 활용하여 순환경제정보컨설팅, 기술보급, 홍보교육 등 업무를 전개해야 한다.　　국가청정생산센터는 국가환경보호총국의 청정생산 및 순환경제 추진 면에서의 기술지원단위로서 총국을 협조하여 순환경제기술 정책과 관련표준을 제정하고 중점기업에 대한 청정생산 심사 및 국가 생태공업시범단지와 순환경제시범구의 건설을 추진한다. 각급 환경보호과학연구원(소)와 청결생산센터는 현지 환경보호부서를 협조하여 청정생산과 순환경제 업무를 추진하여 기업의 청정생산 심사와 순환경제 시범업무에 컨설팅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9. 녹색소비를 적극 추진해야 한다.　　(19) 국민의 녹색소비를 적극 인도해야 한다. 계속 환경표지상품의 인증과 환경관리체계의 인증 발전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 각급 환경보호부서는 선전교육 활동을 광범위하게 전개하여 국민의 환경의식과 녹색소비의식을 제고해야 한다. 환경보호에 유리한 생활방식을 제창하고 사회단체와 기업이 녹색소비활동과 녹색학교, 녹색 구역사회 건설 활동에 적극 참여하게 해야 한다. 효과적인 조치를 취하여 지도와 집법 업무를 강화하여 소비자의 과도한 포장을 줄여야 한다.　　(20) 정부의 녹색구매를 적극 제창한다. 관련부서와 협력하여 우리나라의 정부녹색구매제도를 조속히 구축하고 재생이용제품, 환경표지상품, 유기식품, 그리고 ISO14001환경관리체계 인증 혹은 청정생산 심사에 통과된 제품을 사용하도록 격려한다. 정부의 모범적인 작용을 통하여 사회단체와 기업이 녹색소비활동에 적극 참여하도록 인도해야 한다.　　10. 간부의 실적 심사체계를 완벽히 하고 선전교육과 국제교류를 강화해야 한다.(21) 간부의 실적 심사와 선전교육을 강화해야 한다. 조직부서를 적극 협조하여 순환경제와 환경보호지표를 간부의 실적 심사지표체계에 넣어야 한다. 과학적 발전관과 실적관에 대한 선전을 강화하여 각급 영도간부의 지속적 생산 및 소비의식을 제고시켜야 한다.　　각급 환경보호부서는 관념과 업무처리 사고방식을 바꾸고 정부, 공업단지와 기업에 순환경제 이념을 선전하고 순환경제시범구, 생태공업단지, 생태시범구, 환경보호모범도시, 환경 친화형 기업 등의 건설 경험을 홍보해야 한다. 정부, 공업단지와 기업의 부동한 인원의 부동한 요구에 따라 부동한 순환경제 교육과 교육계획을 제정하여 순환경제 시범 및 시범지역의 관련인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22) 순환경제의 국제교류를 증진해야 한다. 각종 형식의 순환경제연수반을 개설하여 선진국의 순환경제발전 현황과 선진경험을 파악해야 한다. 지방 환경보호부서와 순환경제 시범단위의 순환경제 발전국가의 현지시찰과 학습을 조직해야 한다. 국제순환경제 고층포럼을 개최하여 국내외의 성공경험을 광범위하게 교류해야 한다. 각급 환경보호부서는 각종 국제협력루트를 충분히 이용하여 외국의 순환경제분야 선진경험과 기술을 도입하여 인원교류를 강화하고 순환경제발전 추진능력을 제고해야 한다. |  | **关于印发《国家环保总局关于****推进循环经济发展的指导意见》的通知**环发〔2005〕114号   各省、自治区、直辖市环境保护局（厅），计划单列市环境保护局： 　　为全面贯彻《国务院关于加快发展循环经济的若干意见》（国发〔2005〕22号）精神，结合环保工作推动循环经济发展，保护和改善环境，促进建设资源节约型和环境友好型社会，我局制定了《国家环保总局关于推进循环经济发展的指导意见》。现印发给你们，请认真贯彻执行。 　　附件：国家环保总局关于推进循环经济发展的指导意见 　　 二○○五年十月十日 附件： **国家环保总局关于推进循环经济发展的****指导意见**为全面贯彻《国务院关于加快发展循环经济的若干意见》（国发〔2005〕22号，以下简称《意见》）的精神，紧密结合环保工作推动循环经济发展，加快改变以末端治理为主的传统污染防治模式，增强环境保护监督管理能力，保护和改善环境，建设资源节约型和环境友好型社会，现就环保部门推进循环经济发展提出以下意见。 　　一、充分认识环保部门在推进循环经济工作中的重要作用和地位 　　（一）深刻理解发展循环经济与环境保护的关系。我国人口众多，资源相对短缺，经济结构不尽合理，经济增长方式粗放，资源利用率低，环境污染严重，资源和环境问题已成为我国可持续发展的主要障碍。发展循环经济，有利于推动污染预防和生产全过程控制，有利于解决区域性与结构性环境污染问题。近年来，全国环保系统将发展循环经济作为环境与经济“双赢”的一项重大举措，大力宣传循环经济理念，组织理论和政策研究，开展企业、区域和社会等多个层面的试点和实践探索，促进了粗放型经济增长方式的转变，在一定程度上缓解了全国环境污染的压力。 　　（二）明确环保部门的职能定位。各级环保部门要根据《意见》的要求和职能分工，与发展改革（经贸）等有关部门密切合作，结合环境保护的各项工作，全面推进循环经济快速发展。 　　各级环保部门要加强对发展循环经济的“指导、监督、推进、服务”。要制定有利于循环经济发展的法律法规、政策、标准，编制循环经济规划技术指南，指导循环经济的发展；认真履行环保部门环境执法职责，进一步加大环境执法力度，强化环境监督管理，严格执行规划环评、建设项目环评和“三同时”制度，提高企业准入的环境要求，推动重点企业实施清洁生产审核；加强宣传教育和培训，推进清洁生产，深化循环经济试点和示范工作；组织开展循环经济的科学研究和技术开发，为建立和完善循环经济的技术支撑体系、提高我国循环经济发展水平和速度服务。 　　二、加强对循环经济发展的规划和指导 　　（三）制定循环经济发展战略和规划。根据我国环保工作的需要，组织制定推进循环经济发展、建设环境友好型社会的战略和计划。各级环保部门要积极配合当地发改委编制循环经济发展规划，用循环经济理念指导环保“十一五”规划和各类专项规划。大力推进各类经济技术开发区和高新技术产业开发区建设生态工业园区，推进重点企业、地区开展循环经济实践，指导其编制循环经济发展规划。 　　（四）加强对全国循环经济建设的分类指导。根据环境管理的要求，组织制定不同区域、重点流域和不同类型工业园区的循环经济发展规划。组织编制钢铁、有色、煤炭、电力、化工、建材、造纸、食品、纺织、电子电器等重点行业的循环经济发展指南。 　　三、制定和完善促进循环经济发展的环境标准体系和环境技术政策 　　（五）严格环境标准，促进循环经济健康发展。加强国家行业污染物排放标准制定工作，促进企业采用环境友好工艺和技术。组织制定废旧塑料、废旧轮胎、废旧机电产品等资源回收利用的环境污染控制技术规范。建立和完善清洁生产标准体系，组织制定行业清洁生产审核指南，指导各地、各行业开展清洁生产审核。 　　各省（自治区、直辖市）环保部门要加强地方行业污染物排放标准的制定。对重点开发区和重化工集中地区，按照循环经济理念，提出入区企业的清洁生产和废物排放综合控制要求。 　　（六）制定污染防治和生态保护技术政策。制订和完善资源能源消耗高、污染严重行业的污染防治技术政策，将“减量化、再使用、资源化、无害化”作为污染防治的基本途径，从产品生产的全过程加强污染预防，最大限度地减少末端治理压力。根据重点地区、流域生态保护的实际需要，制定相关技术政策。制订和完善大力发展生态农业的技术政策，推广环境友好型农业生产技术和污染控制技术。 　　四、深化循环经济试点和示范 　　（七）深化生态工业、循环经济试点和示范工作。选择经济效益突出、资源合理利用、环境清洁优美的企业，进行环境友好企业示范。重点选择各类国家级、省级开发区、大型企业集团和资源再生利用产业（静脉产业）园区，进行生态工业示范；推动循环经济示范区、生态省（市、县）、生态示范区、国家环保模范城市、环境优美乡镇、文明生态村、绿色社区、绿色学校和环境友好工程等建设工作。 　　各省（自治区、直辖市）环保部门要在国家环保总局的指导下，积极开展本地区循环经济试点和示范工作。 　　（八）加强对国家生态工业示范园区和循环经济示范区建设的指导和监督管理。一是发布国家生态工业示范园区和循环经济示范区的指标体系和验收标准，规范试点和示范工作；二是组织制定生态工业和循环经济的规划建设技术指南，指导各类试点和示范建设；三是加强对各类试点和示范单位的管理，包括现场监督检查，确保试点和示范单位能够通过持续改进，降低污染物排放总量，改善区域环境质量；四是及时总结全国循环经济试点经验，推广循环经济先进典型。 　　各省（自治区、直辖市）环保部门要配合国家环保总局进行国家生态工业示范园区和循环经济示范区创建的指导和监督管理，发现重大问题的，要及时上报，并提出整改措施。 　　五、积极引导环保产业的发展 　　（九）加强对环保产业的政策引导，特别是注重对静脉产业发展的引导。制定静脉产业发展政策、法规、标准和技术规范，推进和规范各类废弃物的循环利用。一是推进废钢铁、废铝、废铜、废纸、废塑料、废旧轮胎、废旧家电及电子产品、废旧纺织品、报废机动车、包装废弃物、厨余垃圾等的回收和循环利用，不断完善废旧物资回收、加工、利用体系。二是加强工业废气、废水、固体废物的循环利用，重点抓好危险废物的处理处置；以粉煤灰、煤矸石、尾矿和冶金、化工废渣及有机废水循环利用为重点，推进工业废物综合利用。 　　（十）加强静脉产业园区环境管理。建设静脉产业园区，有利于提升我国静脉产业规模和科技含量，也有利于静脉产业的污染防治和环境管理。要通过严格的环境管理，减少废物再生过程中的二次污染，保障区域环境质量和人群健康。同时要加强进口废物入园管理，防止以“废物利用”名义，从境外非法购进废物。 　　六、强化环境监管 　　（十一）强化环境影响评价，严格执行环境准入制度。一是积极推动规划环评，将环境因素更为系统地纳入宏观战略决策，以解决经济发展与环境保护的矛盾，使产业发展、生产力布局与区域资源禀赋、环境容量和生态功能相一致，促进发展方式的转变和实现循环经济。二是严格建设项目环境影响评价，依法限制新建能耗物耗大、污染严重的项目。 　　（十二）加强对污染行业和企业生产全过程的排污控制。依法对污染物排放超标和超总量的企业，强制实施清洁生产审核。当前要重点加强对电力、钢铁、化工、有色金属、印染、食品、造纸等重污染行业的清洁生产审核。 　　（十三）建立严格的强制淘汰制度。配合发展改革（经贸）部门公布技术落后、污染严重的生产工艺和设备淘汰名录，对规模不经济、污染严重的造纸、酿造、制革、电镀、印染、化工、冶炼、炼焦、建材、火电等企业和落后生产力、设备和产品实行强制淘汰，促进产业结构优化。 　　（十四）严格依法行政，坚决处罚违法行为。组织开展重点地区、行业打击环境违法企业环保执法专项行动，从规范企业环境守法行为、促进企业共生群落构建的角度出发，严格环境执法，增强全社会环境意识，创造公平竞争环境，推进循环经济发展。 　　七、建立健全推进循环经济发展的环保法规及相关政策 　　（十五）建立推进循环经济发展的环保法规体系。加快研究和制定各类固体废物回收利用和污染控制配套法规，逐步建立生产者责任延伸制度。研究建立行政代执行、环境准入等制度。 　　（十六）完善排污收费政策，推进循环经济发展。在中央和地方集中的排污费使用方面向循环经济项目和技术倾斜，重点支持清洁生产项目、“零排放”技术、循环利用技术等的示范和推广。 　　八、建立环保系统推进循环经济发展的技术创新体系和咨询服务体系 　　（十七）建立循环经济发展的技术创新体系。加大对循环经济技术研发和推广的支持力度，提高我国循环经济技术支撑和创新能力。各级环保部门要鼓励科研机构和企业重点开发具有普遍推广意义的减量化技术、再使用技术、资源化技术、替代技术、共生链接技术和系统集成技术等实用技术，促进资源的循环利用。加大循环经济的理论、方法、发展战略和政策研究力度，着重研究资源能源消耗高、污染严重行业和地区的物质流动和物质代谢规律，研究有利于循环经济发展的物质代谢重组技术。组织调研不同地区、不同行业物耗、能耗及废物产生、排放状况，研究我国循环经济发展的潜力和途径。 　　（十八）建立循环经济发展的咨询服务体系。积极支持建立循环经济信息系统和技术咨询服务体系，及时向社会发布有关循环经济技术、管理和政策等方面的信息。要充分利用现有的环境科研、服务机构和社会团体的力量，开展循环经济信息咨询、技术推广、宣传培训等工作。 　　国家清洁生产中心是国家环保总局在推进清洁生产和循环经济方面的技术支持单位，协助总局组织制定循环经济技术政策和相关标准，推进重点企业实施清洁生产审核以及国家生态工业示范园区和循环经济示范区的建立。各级环保科研院所和清洁生产中心要协助当地环保部门开展清洁生产和循环经济推进工作，为企业清洁生产审核和循环经济试点工作提供咨询服务。 　　九、积极推进绿色消费 　　（十九）积极引导公众的绿色消费。继续积极推动环境标志产品认证和环境管理体系认证的发展。各级环保部门要广泛开展宣传教育活动，提高公众的环境意识和绿色消费意识。大力提倡有利于保护环境的生活方式，引导社会团体和企业积极参与绿色消费活动，参与创建绿色学校、绿色社区的活动。采取有效措施，加强引导和执法工作，减少消费品的过度包装。 　　（二十）积极倡导政府绿色采购。与有关部门协作，争取尽快建立我国的政府绿色采购制度，鼓励使用再生利用产品、环境标志产品、有机食品以及通过ISO14001环境管理体系认证或清洁生产审核企业的产品。通过政府的表率作用，引导社会团体和企业积极参与绿色消费活动。 　　十、完善干部政绩考核体系，加强宣传培训和国际交流 　　（二十一）加强干部政绩考核和宣传培训。要积极配合组织部门把循环经济和环保指标纳入干部政绩考核指标体系。大力宣传科学的发展观和政绩观，提高各级领导干部的可持续生产与消费的意识。 　　各级环保部门要转变观念和工作思路，向政府、园区和企业宣传循环经济的理念，宣传创建循环经济示范区、生态工业园区、生态示范区、环保模范城市、环境友好企业等的经验。针对政府、园区和企业不同层次人员的不同要求，分类制定循环经济的教育和培训计划，对循环经济试点和示范地区的有关人员进行培训。 　　（二十二）加强循环经济的国际交流。组织多种形式的循环经济研修班，了解发达国家循环经济的发展现状与先进经验。组织地方环保部门和循环经济试点单位赴循环经济发展较好的国家实地考察学习。召开国际循环经济高层研讨会，广泛交流国内外的成功经验。各级环保部门要充分利用各种国际合作渠道，引进国外循环经济领域内的先进经验和技术，加强人员交流，提高推进循环经济发展的能力。  |